

# 「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3월 10일, 심현정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0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03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심현정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
나.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와 임업인 등의 책무규정  
(안 제3조)

다. 사업비 지원범위(안 제4조)

라.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 규정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3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와 임업인 등의 책무  
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범위  
안 제5조에서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,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, 삼척시, 양구군, 양양군, 화천군이 있으며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업관계자”란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립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임업인”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임업후계자”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독립가”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산림관련단체”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란 평창군산림조합, (사)한국임업후계자협회 평창군지부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(산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6. “임업인 등”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

다.

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,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평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범위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그 밖에 임업관계자들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임업인 등 경비지원)**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
2.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
3.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
4. 그 밖에 신기술 확산,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
2. 임산물의 판매·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·소비·홍보사업
3.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(포럼, 심포지엄, 대회, 대전 등) 개최 지원
4.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·외 연수사업
5. 산림관련단체의 산업·교육·문화·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

**제6조(다른 조례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